

2016년도 업무보고  
서 면 질 의 답 변 서

- 2016. 6. 29. 문화재청 업무보고 시 -

2016. 7.

문화재청



# 순 서

2016. 6. 29.(수) 문화재청 임시회 시

강 길 부 의원 .....	1
곽 상 도 의원 .....	4
이 동 섭 의원 .....	9
이 은 재 의원 .....	14
이 장 우 의원 .....	18

# < 목 차 >

<b>&lt;강 길 부 의원&gt;</b> .....	<b>1</b>
1. 언양읍성 복원사업 신속추진 .....	3
1) 언양읍성은 우리나라 보기드문 평지성으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지지부진으로 신속한 복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b>&lt;곽 상 도 의원&gt;</b> .....	<b>4</b>
1. 문화재, 보존중심에서 활용정책으로 변화 필요 .....	6
1) 세계 각국이 문화재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상품으로 평가하고,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하고 있음. 우리 문화재청의 방향은 어떠한가? .....	6
2) 지역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화해야 하는대 동의하는가? .....	6
2. 지방문화재 훼손, 정부차원의 대책필요 .....	6
1)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등으로 인해 우리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 .....	6
2) 지난 5월 통영시가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99호 소반장(추용호 장인)이 쓰던 문화재급 물품이 강제집행과정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7
3) ‘문화재’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정말 지켜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	7
4)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7
5) 지자체에서 일어난 매장문화재보호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화재 보호인식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8

**<이 동 섭 의원> .....9**

- 1.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문화재 훼손 심각 ..... 11
  - 1) 문화재청에 ‘최근 3년간 전국 문화재 훼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모두 7건을 제출했습니다. 건수가 너무 적어 재차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관리 중요문화재에 대한 훼손 현황 자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의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청이 훼손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11
  - 2)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봉국사 내 대광명전”이 인근 아파트 철거 공사로 인해 사찰 곳곳에 균열 발생. 문화재청은 경기도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설공사 도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11
  - 3-1) 파주시 소재 국내 최대 신석기 시대 유적 문화재가 도로개설공사로 일부 훼손,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지정해 놓고, 시공사가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능선을 절개할때까지 문화재청은 사전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습니까? .... 12
  - 3-2) 사전 모니터링에 힘써서 문화유산 보전 관리 필요 ..... 12
  - 4-1) 경주 황룡사지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경계석축 시공, 배수로 터파기 공사로 인해 통일신라 유적 훼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청장 인지 여부 ..... 12
  - 4-2) 문화재청 보고 없이 경계 석축 시공 등 설계 변경을 추진한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경주시 해당 공무원 징계 관련 여부 ..... 12
  - 5) 문화재청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국단위로 문화재 훼손 현황을 취합하여 교문위에 보고하고, 조치사항도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13

**<이 은 재 의원> .....14**

- 1.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사업 실패 관련 ..... 16
  - 1)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해체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 16
  - 2)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공사가 3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16
  - 3) 문화재청 담당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문화재청은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임시물막이 구조물이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반구대암각화를 훼손했어도 그런 말을 하실 건가요? ..... 17

**<이 장 우 의원> .....18**

1.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시 기준 ..... 20

    1) 무형문화재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20

    2)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판단에 의한 전승자 양성이 아직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지 않나? ..... 20

    3) 종목별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전승활동이 제한되지 않는가? ..... 20

    4)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제도이지 않는지? ..... 21

2. 반구대 암각화 보존 추진 현황 ..... 21

    1)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복원은 어느정도 진행중이었나? ..... 21

    2) 모형실험과 현지 기술평가단의 복원과정 중 복원이 제한되었다는데 향후 대책은? ..... 22

    3) 훼손정도가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대책은? ..... 22

    4) 복원과정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과감히 중단할 필요성이 있고 무리한 복원이 진행될 경우 문화재 훼손 및 예산낭비등 피해가 덜 클수 있지 않나? ..... 22

    5) 반구대암각화 복원을 중단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 22

    6)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모형은 여러곳에서 전시되어져 있으나 실물과 똑같은 복제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민들의 접근성, 비슷한 환경등을 고려하여 실물과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도 고려했는지? ..... 22

---

강 길 부 의원

---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1

1. 언양읍성 복원사업 신속추진

1) 언양읍성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평지성으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신속한 복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 언양읍성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주 불편해소를 위하여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으로 우선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비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화재의 복원은 충분한 고증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양읍성에 대하여도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고증과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

# 곽 상 도 의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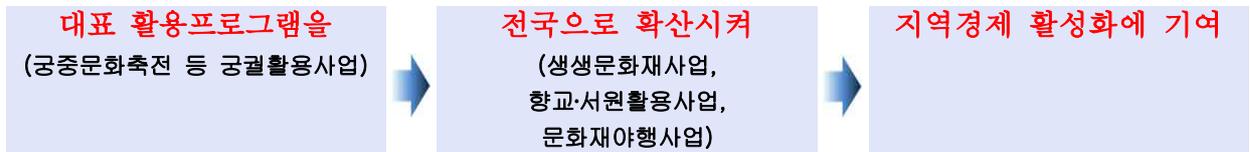
**【서면질의】**

**1. 문화재, 보존중심에서 활용정책으로 변화필요**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박동석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2

**1)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화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방향은?**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단순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소극적 보존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문화유산의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다수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박동석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2

**2) 지역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화가 필요**

- 지방 소재 지정문화재 활용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궁궐과 종묘에 비해 대상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거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향유의 기회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에 있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재 문화재를 궁궐 문화재처럼 품격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확산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향유기회 확대와 보장으로 풍성한 문화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문화재야행(夜行)’ 사업 예산증액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으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지방 문화재 훼손,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1)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등으로 인해 우리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어떤 답변을 내놓았나?**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성남시 봉곡사, 안성시 만정리 고인돌, 부여군 덕용지구 청동기 석관묘 등의 훼손 사례가 있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임승범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4

**2) 지난 5월 통영시가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추용호 장인)이 쓰던 문화재급 물품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사실 관련**

- 우리 청은 2016년 5월 30일 통영시의 추용호 보유자의 자택 철거를 위한 대집행 시,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만일의 사항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추용호 보유자가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혹여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지만,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다소 발생했던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그 이튿날 곧바로 보유자와 협의하여 전승도구와 작품 일부를 국립무형유산원에 임시 이전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문화재’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정말 지켜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 본 사항은 2009년부터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진행되어 2011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완료되었고, 소반장의 보유자가 인정된 2014년 9월엔 도로 확장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여서 우리 청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6년 6월 8일에 통영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공방 건물 및 부지의 가치를 검토하여, 도로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방 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영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4)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지자체 문화재 보호에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람**

- 우리 청은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문화재 전반에 대해 시·도 지정문화재 5,305건을 포함하여 특별 종합점검('13.12월~'14.5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도지정문화재 1,111건에 대해 보수중에 있으며 그 중 예산이 미확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방비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시도 지정문화재는 정기조사를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길태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7

**5) 지자체에서 일어난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화재 보호 인식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처벌 강화, 지자체 직원에 대한 업무 역량 교육 강화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 병행 필요**

-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은 높으나 처벌 형량은 최고 벌금형에 불과하여 문화재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검찰청에 구형량 강화(문화재청 발굴제도과-12624호, 2014.12.10.)를 요청하였으며,
-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계 법령 이해부족에 따른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훼손 사례(문화재청 발굴제도과-5263호, 2016.4.26.) 등을 전파하여 유존지역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부실조사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발굴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구형(벌금형 등)이 되도록 검찰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장문화재 훼손 등 법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동 섭 의원

---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송인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1

**1. 문화재청 관리·감독 소홀로 문화재 훼손 심각**

- 1) 문화재청에 ‘최근 3년간 전국 문화재 훼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모두 7건을 제출했습니다. 건수가 너무 적어 재차 확인을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관리 중요문화재에 대한 훼손현황자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의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할 청이 훼손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73조 제 3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조치 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안 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5

- 2)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봉국사 내 대광명전”이 인근 아파트 철거 공사로 인해 사찰 곳곳에 균열 발생 함. 문화재청은 경기도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설공사 도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문화재보호법 제73조에 의하면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해제하거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따른 보고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정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별도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봉국사 내 대광명전”의 주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임승경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3-1) 파주시 소재 국내 최대 신석기 시대 유적 문화재가 도로개설공사로 일부 훼손,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지정해놓고, 시공사가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능선을 절개할 때 까지 문화재청은 사전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습니까?**

- 2015년도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2015. 7. 1.)의 심의를 거쳐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은 ‘도로 공사(지하차도화)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복원계획을 수립·시공’하도록 경기도와 파주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3-2) 사전 모니터링에 힘써서 문화유산 보전 관리 필요**

- 파주 신석기 마을유적이 현 위치에 이전복원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하였으며,
- 향후 유구보호를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 및 필요시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신라왕경사업추진단
담당자	윤진영 사무관
연락처	054-777-6719

**4-1) 경주 황룡사지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경계석축 시공, 배수로 터파기 공사로 인해 통일신라 유적 훼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청장 인지 여부**

- 역사문화관 부지 유구훼손을 인지하고 경주시에 행위자 고발 및 관련자 행정조치를 통보('16.4.19.)하여 시공사 현장대리인을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5.10.)하였으며,
- 해당 유적은 경주연구소에서 긴급조사 후 복구 완료('16.5.13.~5.20.)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 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공회사, 감리업체 등에 대해 경주시가 관리·감독 등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신라왕경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 현장 점검단을 구성('16.5.23.)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주시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2) 문화재청 보고 없이 경계 석축 시공 등 설계 변경을 추진한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경주시 해당 공무원 징계 관련 여부**

- 문화재청은 경주시에 무단 현상변경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청을 통보(신라왕경사업추진단-810호/16.4.19.) 하였으며, 현재 경주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각 부서
담당자	
연락처	

**5) 문화재청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국단위로 문화재 훼손 현황을 취합하여 교문위에 보고하고, 조치사항도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국 단위의 문화재 훼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문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은 재 의원

---



##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이문갑 서기관
연락처	042-481-3110

### 1.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사업 실패 관련

#### 1)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해체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 가물막이 작업장과 설치된 기초블럭들은 해체 후 반출이 완료되었으며, 가설도로를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 임시물막이 공사가 진작 실패하고도 원상복구 승인을 뒤늦게 해 ‘골든타임(우기전)’을 놓쳤다면 문화재청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6.8. 기술검증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모형을 철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울산시는 6.10. 공식 문서로 통합실외모형 해체를 요청하여 와서, 우리 청은 당일 (6.10.) 바로 해체 진행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2)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 공사가 3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수족관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식으로 접혔다 폼다하는 투명막 이음매가 최고 13m 수위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 투명막이 가변식으로 작동하면서 완벽한 수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검증평가단 수리·수문 전문가 4명은 수리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며 물막이 시설의 안정성 및 차수성이 불안해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 결론적으로는 수리·수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들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이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본 공사 전 모형실험 검증을 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및 국회 교문위 2013년 국정 감사에서도 조속히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 기술검증 위원(14인) 중 수리수문분야 위원(4인) 이외의 위원들은 검증의 계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실제 현장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증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누수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결과론적인 사실입니다.

**3) 문화재청 담당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문화재청은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임시물막이 구조물이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반구대암각화를 훼손했어도 그런 말을 하실 건가요?**

- 임시물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증항목 등을 적시하여 사전 검증을 요구하였으며,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검증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사전검증절차 진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임시물막이 사업이 실패한 만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문화재청은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 울산시와 함께 생태제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장 우 의원

---



##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유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6

### 1.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시 기준

#### 1) 무형문화재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문화재청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 전승자의 전수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전수교육지원금)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승이 취약한 종목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 매월 1,317천원, 전수교육조교 매월 660천원, 보유단체 월 3,500~4,500천원
- 전승취약종목 추가 지원액 : 보유자 매월 393천원, 전수교육조교 261천원, 전수장학생 매월 263천원

#### 2)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판단에 의한 전승자 양성이 아직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지 않나?

- 무형문화재는 인적전승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수교육이 스승과 제자의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3.28)을 통해, 기존 보유자에 의한 도제식 교육과 더불어 전수교육대학 등을 통한 공교육 차원에서 전승자의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유자가 이수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에서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를 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전승자 양성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인정하므로 해당 보유자의 추천을 받고, 전수교육조교로서 책임자인지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 지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에 책임자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종목별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전승활동이 제한되지 않는가?

- 보유자가 고령화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보유자 부재 종목이 된 경우 매년 전승자 충원 계획 수립 시 충원 대상 종목으로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종목별로 전승자 충원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전승자의 충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변지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8

#### 4)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제도이지 않은지?

- 최근 종목별 보유자들의 고령화 현상 및 보유자 부재종목 증가 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승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세대간 전승기반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유자·보유단체의 이러한 활성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승활성화 노력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16.1월)

**- 실적 평가 지표 :**

①공개행사 점수, ②전승자 수 증감률, ③전수교육 횟수·참여율, ④대외 전승활동 실적(공연, 행사, 교육 등), ⑤ 전승지원금 집행 투명성·적정성

\* 2010년부터 매년 공개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유자 등 전승자 기량 점검 실시

**- 지급대상**

- (보유자) 음악·공예기술 등 7개 분야로 구분, 개인별 전승활성화 노력도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유단체) 64개 단체 중 상위 20%(13단체)를 선발, 단체별 전승활성화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포상금 지급시기 :** '16.11월(예정)

- 향후 보유자·보유단체에게 균일 지급되는 월정전승지원금은 점진적으로 동결·축소하고 종목별 특성(상황, 노력도)에 따른 포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종목의 역량 강화, 전승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이문갑 서기관
연락처	042-481-3110

## 2. 반구대 암각화 보존 추진 현황

### 1)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복원은 어느 정도 진행중이었나?

- '가변형 임시 물막이'(일명 카이네틱댐)는 사연댐의 수위가 상승했을 때 암각화가 침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암각화전면에 설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암각화 복원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2) 모형실험과 현지 기술평가단의 복원과정 중 복원이 제한된다는데 향후 대책은?**

- 임시 물막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울산시가 기술검증평가단을 구성하여 검증모형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투명막의 수밀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일어나 실패하게 되었으며 복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3) 훼손정도가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대책은?**

- 울산시와 함께 생태제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복원과정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과감히 중단할 필요성이 있고 무리한 복원이 진행될 경우 문화재 훼손 및 예산낭비 등 피해가 더 클 수 있지 않나?**

-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사업은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복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5) 반구대암각화 복원을 중단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 임시 물막이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암각화 침수 방지를 위한 대안을 울산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모형은 여러곳에서 전시되어져 있으나 실물과 똑같은 복제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민들의 접근성, 비슷한 환경등을 고려하여 실물과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도 고려했는지?**

- 최근 울주군에서 ‘반구대암각화 모형 제작·설치 및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실물모형 제작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모형 제작을 위해 울주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